

제418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30일(월)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7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4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5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7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3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47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4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9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62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80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58)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54)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421)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8)**상정된 안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713) 3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40) 3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53) 3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75) 3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23) 3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35) 3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479) 3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42) 3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92) 3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627) 3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805) 3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58) 3
 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54) 3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421) 3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8) 3
-

(09시02분 개의)

○소위원장 김현 의원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기부2차관, 방통위 사무처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

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켜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13)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40)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53)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275)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23)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35)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479)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42)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92)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27)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805)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58)
 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354)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421)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8)

(09시04분)

○**소위원장 김현** 의사일정 제1항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12건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딥페이크 기술 악용 사례로 딥페이크 성범죄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사기,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 인공지능의 악의적 사용을 통한 범죄에 대응하려는 입법의 일환으로 사업자의 책무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의 허위조작정보 부분은 딥페이크 범죄 관련 내용과 함께 법안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 소위 자료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지난 법안소위에서 이미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의 침해 우려가 없는 허위조작정보 유통까지 처벌하려는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딥페이크 범죄 관련 정보를 권리침해정보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권리침해정보보다는 불법정보로 보아 논의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12쪽을 보시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딥페이크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보도 목적의 촬영물 등의 정보도 포함될 수 있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 불법정보에 이미 포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7쪽을 보시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정보도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신속한 차단 측면에서 타당한 내용이며 수사기관의 장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삭제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을 보시면 안 제44조의11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공지능 생성물이 가상정보라는 사실에 대한 표시방법 마련 및 이용자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뒤에 32쪽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표시방법 마련 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에게 표시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고 과기부가 규율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에 박스로,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방법 마련 의무 관련 대상 정보를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 및 사기 등 악용 우려 정보로 좁히기 위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로 대상 정보를 좁히고 이 경우 가상정보의 표시방법

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이 안에 대해 수용 입장인 반면 과기부는 모든 얼굴·신체·음성 대상 딥페이크 정보가 성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점식 의원의 인공지능 기본법안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에 표시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무이행 확보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 비해 망법 수정안은 사람과, 즉 딥페이크 성범죄 및 사기 등과 같은 범죄 우려가 있는 영역과 관련된 인공지능 생성정보의 표시방법 마련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59쪽을 보시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사례를 예시해 놓았습니다.

다시 다음, 21쪽을 보시면 인공지능 생성정보에 대한 표시의무로 인공지능 생성정보를 유통·제시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가 가상정보임을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개인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인공지능 사업자를 대상으로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개인에게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해외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인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4쪽을 보시면 안 제3항은 가상정보 표시의 임의 제거·변경 금지 내용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안과 EU AI법에 해당 규정이 없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5쪽을 보시면 가상정보 표시의무 미이행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 의무 등의 내용으로 조치 내용에 있어 김승수·조인철 의원안은 삭제 의무를 규정함에 비해 김장겸 의원님 안은 직권 표시, 삭제 등 접속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표시의무 대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과기부가 삭제 의무는 사회적 위해성 여부와 무관하게 표시의무 위반만을 이유로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검토 의견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7쪽을 보시면 안 제5항은 표시의무 미이행, 표시 훼손 이용자에 대한 경고, 이용정지·해지, 수익 제한 등 조치 의무 내용이고.

다음, 28쪽을 보시면 안 제6항은 인공지능 기술개발·공급자의 식별 방법 마련 등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 내용으로 두 규정 모두 인공지능 기본법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음, 32쪽을 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표시의무 미이행 이용자 또는 표시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자에 대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입니다.

다음, 34쪽을 보시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보존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협조 근거를 두려는 내용으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자료의 보존 및 기술적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의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7쪽을 보시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고의·중과실로 불법 촬영물 및 딥페이크 성범죄 정보가 유통되게 한 경우 손해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으로 방통위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시 이중처벌 우려와 직접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반포·판매한 자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신중검토 의견을 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9쪽을 보시면 황정아 의원안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자 확대 내용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텔레그램 등 주요 글로벌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미 현행 법정 기준을 상회하고 있고 국내 영세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신중검토 필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43쪽을 보시면 과기부장관과 방통위의 딥페이크 정보 관련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 시책 마련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수정의견으로 박충권 의원안을 채택하였으며 법 체계상 총칙에 제4조의2로 규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해 방통위는 수용 의견, 과기부는 논의 필요 의견입니다.

다음, 47쪽을 보시면 사업자단체에 청소년 유해 정보,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0쪽을 보시면 50쪽 이하의 딥페이크 정보 편집·합성·가공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별처 규정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54쪽을 보시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 규정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법 체계상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 57쪽을 보시면 부칙 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표시방법 마련의 경우, 만약에 입법화할 경우 아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1년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의제3항제4호의3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대부분의 내용이 일단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법은 성폭력방지법 그다음에 처벌 특례법, 아청법에 관련된 내용하고 전기통신사업법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법 체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논의될 AI법에도 담아야 될 부분에 대한 정합성과 내용 그리고 국제적 동향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석전문위원께 말씀드렸고 그런 내용이 수석전문위원 발언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방통위 의견이요.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조성은 방통위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 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에게는 유통 방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개선이 국내 영세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딥페이크가 아닌 일반적인 혐의조작정보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의 규정 등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현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 한민수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해외 사업자’하고 ‘국내 영세사업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걸 근거를 할 수 있는 데이터랄지 기준이 있습니까, 말씀을 하실 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현행법 추계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그리고 매출액 10억 이상의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가, X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디스코드 같은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딥페이크 규제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주로 해외 사업자 부분입니다.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강력한 규제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굳이 해외 사업자 규제를 위해서 기준을 낮췄을 경우에 결국은 국내 영세·중소 사업자만 규제 대상으로 포섭되는 사업자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업자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하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10만 이상, 10억 이상 사업자가 있다면 저희가 규제 대상으로 이미 현행법으로도 포섭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 제도 자체는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이해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민 위원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이 심사자료를 사실 어제 다 꼼꼼히 읽어 보았고요. 엄청 많은 부분 잘 심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지난번 AI 기본법에 대해서 저희가 공청회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AI라는 기술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어요. 그래서 딥페이크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은 AI 기본법에서 담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내용이 성착취물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특히 아동·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많고 그 내용들이 유통이 되는 것이 문제가 심하고 그다음에 삭제 요청 과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안을 다 하나씩 볼 때 저는 어느 부분을 볼 것이냐 하면 방금 말씀

드렸듯이 딥페이크라는 어떤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AI 기본법 쪽에서 담아야 될 것 같고 삭제 요청을 용이하게 만든다거나 처벌 규정을 더 강화를 한다거나 그리고 방금 방통위에서 말씀하셨듯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해외 사업자 잡으려다가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들 잡게 될 수 있는 그런 역차별 가능성은 방지하는 쪽으로 오늘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AI 기본법과의 정합성 문제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 더 하실 말씀 없으면 1번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망에서도 망에서 취할 의무조치하고 과태료 이런 것을 했는데 여기서 만일……

수많은 사람들이 알면서 할 수도 있고 모르면서 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범죄가 되고 특히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막 망을 통해 퍼트리는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개인이 이렇게 합성물을 만들고 그걸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데 대해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기본법에다 포함시킵니까, 아니면 관련 법에다…… 다른 처벌 근거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쪽 문제는 성폭력방지법이나 아청법에서 이미 이번에 법안이 통과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성폭력법에서는 소지 유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알면서’라는 문제를 넣을까 말 것이냐까지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 제작·유포·반포 문제에 대해서는 성폭력방지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법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 공청회 때 있었지만 거기에 AI법에 있어서 생성형 AI의 표시의무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를 담당하는 부분으로 현재 되어 있으나 그 공청회 과정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정의 문제, 디벨로퍼에 대한 문제까지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공청회 이후에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일정한 다른 방식에 대한 것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법적 책임이라는 내용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AI법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간사님 주셨던 말씀은 기존의 제작자들은 망법, 사업법이 아니라 타 법에도 현재 규율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지금 대통령령으로 규제 기준을 정한 것이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분이 답변 주셔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책임자 지정 이외에 다른 규제가 있나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망법에서는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활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22조의5에 불활물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일단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두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방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활물 DNA DB가 있습니다. 그것과 대조해서 만약에 불활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시 자체를 사전에 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 정도 규제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 기준을 좀 낮춰서 5만 명 이상으로 하자라는 것은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어디에서 비롯될지 모르고 또 5만 명 이용이라면 적은 수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 정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한테 얼마나 큰 규제를 두길래 이게 해외 플랫폼 잡으려다가 영세 사업자들만 골탕 먹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나오는 것인지, 그러면 진짜 5만 명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사업자들은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일단 저희가 그 법안을 만들 때 사실 국내에서 이런 불활물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한 규제입니다. 이렇게까지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국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국가들은 공산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과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해외 규제 사례를 찾아보면 EU의 DSA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EU의 DSA법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로 사업자 기준을 강화시켜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EU의 DSA법 같은 경우에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월평균 이용자 수를 4500만 기준으로 두고 있고 그다음에 매출액 기준 같은 경우에 1000만 유로 이런 형태로 해서 규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법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결국은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다 구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된다는 사업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10만 그다음에 10억 이런 기준으로 예전에도 논의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예.

○**소위원장 김현** 예, 말씀하시지요.

○**김장겸 위원** 그게 지금 노 위원 말씀하신 것 충분히, 답변이 저도 잘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그 예산, 인력이 얼마나 더 드는지는, 그게 영세 사업자들이 아예 사업을 못 할 지경이나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인지 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신 국장님, 그러니까 해외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기준을 낮췄을 때 과연 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나 아주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인지 저도 좀 그게 의심스러워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일단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가 10만·10억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9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만·5억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사업자가 늘어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개별 사업자별로 운용하는 규모라든가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막 듣다고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의 입장은 그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이미 지금 현재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제가 추가로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5만·5억의 사업자가 몇 개 사업자입니까? 전체 전수조사가 됐나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전체 전수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하세요,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소위원장 김현 그렇게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n번방 할 때의 답변하고 똑같거든요. 그 뒤에 지금 딥페이크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고 청소년·아동들에 대한 피해가 크고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신속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뀌어진 조건에 맞춰서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그 영세한 사업자는 부침의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성장한 기업도 있을 거고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사실 다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소위원장 김현 그 규제에 대한 문제보다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성장을 위해서 딥페이크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성장한 기업들은 이렇게 망법 망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사실 지금 규제 수준에서 주로 규제 대상으로 들어온 사업자들이 국내 사업자도 있지만 해외 사업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외 사업자가 상당히 대규모 사업자들만 들어와 있고 실제로 지금 딥페이크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특정한 메신저 플랫폼, 해외의 메신저 플랫폼,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라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규제 집행력 확보가 어려워서 문제를 초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사실은 기준에 저희 규제 범위에 들어오는 사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어떻게 강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강화를 할 것인지보다는 실질적으로 규제 집행력을 갖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고 굳이 이렇게 대상 사업자를 늘린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아니, 제가 늘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5억·5만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파악이 안 됐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파악을 해 보시고요, 보고하세요. 파악을 하고 보고하시라고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별도로 보고하세요. 그것을 규제하겠다, 범위를 강화시켜 가지고 뭔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한번 시장조사를 해 보라는 거예요,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알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잠시 한 말씀 더……

○소위원장 김현 예,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는 알지요. 이번에 시작된 것도 해외 사업자들, 큰 사업자들 중심인데 이것은 규제를 넘어서 우리가 알고 접근하는 관리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인력을 확보하든 해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알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최형두입니다.

추가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망에서 지금 이 규정 정도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망을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기준이면 그 사람들한테 전원 부과할 의무를 할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텔레그램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결국은 텔레그램에 대해서 규제를 했을 때 물론 다른 형태의 보안 메신저 사업자로 이용자들이 옮겨 가거나 그럴 우려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일평균 이용자 수가 충분히 10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현 이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정현 위원 이정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서 만든 가상의 정보의 경우에 반드시 AI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어요. 표시의무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워터마크 미표시 정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미표시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게재되도록 놔두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지금 저희가 낸 의견 부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게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것을 인지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그래서 삭제하지 않더라도 이게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용자가 워터마크를 의도적으로 삭제한다거나 잘라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표시를 하도록 하면 되고요.

그런데 오늘 논의되는 법안에서는 만약에 이용자에 대해서 어떤 책무를 부과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이용자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또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건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일차적으로는 이용자의 경우에 다양한

이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생성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을 계시, 펴다 나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다양한 이용자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펴다 나른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인공지능 생성물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이용자라고 봐서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면 이용자에 대해서도 표기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과기정통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셨던 말씀에서 이용자의 워터마크를 표시하는 것, 이용자가 있고 사업을 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이 있고 거기다가 개발자가 있고 이런 구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시의무, 플랫폼을 가지고 거기에 올리는 것들은 관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합성물을 올렸는데 그것을 탐지하기가 실제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용자 개인이 그 워터마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책무를 부여하는 경우는 EU나 다른 행정명령에서도 나와 있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망법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AI법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 이해민 위원님께서도 그 취지에서 종합적으로 AI법과의 연계성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소위원장 김현**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종면 위원** 지금 망법이든 AI 기본법이든 표시의무에 대한 규정이 들어갈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표시의무를 면해 줘야 되는 대상에 대한 규율, 예를 들면 영화나 창작물에 그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는 허용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또 2차로 임의로 가공해서 게시할 때야 표시의무 적용 대상으로 삼으면 될 텐데 영화 같은 예술 창작물에 딥페이크 영상을 쓸 경우는 어떻게 규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저희의 판단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딥페이크에 관련된 분야를 한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논의의 주제인 것처럼 타 법에 허위 영상물이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 성착취물이라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EU법도 생성형 AI 플러스 딥페이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하되 딥페이크 전체를 규율하지 않고 실제로 성착취물 그다음에 허위영상물처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까 노종면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그러면 의도적으로 워터마크를 제거해서 배제시킬 수 있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일정한 제재 부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 위원 박충권입니다.

딥페이크 정보를 유통금지하는 조항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같은 허위영상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사기·허위영상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제44조의7로 불법정보 유통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영상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들이 많이 제작·유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유명 운동선수, 손흥민 선수의 영상을 허위영상으로 만들어서 주식 리딩방에 사용하면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연예인들도 이런 허위영상물·조작영상물들에 많이 사용이 되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지금 이 피해자가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거의 1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식 리딩방에서 그런 허위영상을 만들어서 광고를 해 놓고 자기들은 사기가 아니라 그냥 홍보 차원에서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뭐로 처벌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보통신망법상에 조항을 하나 추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법 제정은 신중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성폭력처벌법 그리고 허위, 그러니까 사기와 관련된 정보통신망법상의 조항 이런 것으로 처벌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신중검토라고 과방위랑 방통위가 의견을 냈는데 정말 이게 만약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으면 용역을 하든지 법률 자문을 맡겨서라도 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기본적으로 이 건은 방통위 소관인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성착취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허위영상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망법의 44조는 기본적으로 사생활과 명예훼손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정보 유통이라는 것은 44조의7에는 음란, 명예훼손, 공포·불안감, 그다음에 프로그램 오류, 청소년 유해, 사행성, 국가기밀, 보안법 위반 그리고 범죄 교사·방조의 혐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그 콘텐츠의 내용을 바라보면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와 사기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되어서 44조의7의 9가 굉장히 포괄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방통위랑 저희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 현재의 규정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법 집행이나 내용에 있어서 오히려 더욱더 구체적인 표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4조의7의 9가 아니라 10에 새로운 유형의 내용을 담는 열거형이라면 또 판단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의 조항에 허위 조작정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법에서는 처벌이나 내용에 굉장히 어려움이나 해석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충권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식 리딩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지요, 피해 규모도 1조 원에 달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현행법상으로, 예를 들어서 주식 리딩방에서 허위·조작영상물을 사용해서 어떤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범죄 행위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하냐라는 거지요. 이 허위·조작영상물을 사용한 사람들이 ‘아니, 그냥 재미로 만들었어요. 그냥 홍보하려고 만들었어요’라고 했을 때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금지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은 지금 현행법상의 법 조항을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추가 조항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이런 검토들이 신중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면밀하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통위도 말씀……

○김장겸 위원 예, 실국장이 좀 말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신 법안의 내용에 요건 규정이 약간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요. 기존에 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기본법의 허위통신죄, 형법상 업무방해죄, 기타 등등 해서 현행법에 따라서 그런 사기에 의한 정보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내신 건데요. 구체적으로 1항부터 검토를……

○최형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더요.

○소위원장 김현 마이크를 켜세요.

○최형두 위원 예, 최형두입니다.

지금 이 망이 국내망만 아니라 이제 해외망,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해외망들 텔레그램 같은 곳에서 이제 우리 한국인에 대한 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이것을 주권 국가로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뭐 정부도 관련 기관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대비한 무슨 선언적이랄까 이런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케이스인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지금 우리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IP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강도현 카메라.

○최형두 위원 예, IP 카메라 같은 청소기라든가 이런 게 워낙 싸니까 중국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산의 경우에는 이 보안업체에서 백도어가 있어서 이것을 중국으로 빼 가는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중국산에 대해서 차단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중국의 음란물 사이트에 중국산 IP캡으로 찍힌 한국인들의 사생활 동영상이 대거 이렇게 지금 유통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중국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차단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게 일단은 스크린되기 전까지는 국내도 언제든지 접근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예컨대 중국산…… 중국에서 중국 내의 음란물 사이트……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기본적으로 중국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방심위에서 심의를 하면 IP 차단 형식으로 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그 IP를 계속 변경해서 다른 IP로 들어오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최형두 위원** 계속 하겠지요.

그것은 이런 법이 없어도, 새로운 법 개정이 없어도 차단할 근거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삭제·차단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법 개정할 필요는 없네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텔레그램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국내에서 마음만 먹으면 차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그것을 워낙 많이 사용하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텔레그램이 그 같은 조치를 조금 우려하기도 해서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텔레그램 서버 자체에서 삭제하는 것은 저희가 방심위에서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오케이 해서 삭제를……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랑 텔레그램 간에 핫라인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형태로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IP 차단, 통신사 IP 차단을 통해서 막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것도 역시 이 법에 새로운 개정이나 추가 조항이 없이도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가능합니다.

○**최형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런데 IP 차단이라는 의미는 포털이 완전히 차단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전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IP 차단은 아까 콘텐츠의 내용물에 대해 이야기한 삭제 요청이 아니고 IP 차단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서비스를 차단해 버리는 내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국내 내국인의, 국민에 대한 범죄 행위고 신고했으면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언제든지 차단할 근거는 있고 또 실제로 차단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삭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삭제 요청?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삭제 요청도 하지만 저희가 IP URL 단위로 차단도 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것은 이런 법적인 조치 없이 지금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런 피해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피해에 대한 조치도 이번 기회에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그것은 이미 다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제·차단은 가능하고요. 다만 IP를 변경해서 또 동일한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 아니면 별도의 기술을, 그러니까 VPN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우회 접속을 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접속하는

경우에는 좀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어렵지만 아무튼 신고가 있고 피해가 확인되면 차단이 가능하다, 이것은 추가적인 법적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위원장님, 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장 김현** 그래도 한 번씩 죽 가지요, 뭐. 1항에서부터……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항별로……

○**소위원장 김현** 항별로, 예.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런데 지금 내용이 항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소위 자료가 지금 번호를 매기면서 주제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제별로 보시는 게, 그러니까 5페이지부터……

○**소위원장 김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항별로 돼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아니, 주제별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아니, 항별로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주제별도 있어서…… 저는 항별로 지금 가지고 있어서……

○**노종면 위원** 의원실에서 정리해 온 거.

○**소위원장 김현** 예, 의원실…… 그러니까 각자 항별로 해 가지고 1항부터 12항까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소위원장 김현** 국회하고 그다음 정부 측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견을 갖고 계속 심사 논의할 거냐 아니면 수용할 거냐 신중검토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1항부터 12항까지 정리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러면 이 소위 자료에 따르면 지금 제가 크게 네 가지의, 그러니까 나머지 항들은 신중검토 필요 의견에 따라서 계속 논의로 제가 처리를 했고 지금 수정의견에 표시가 된 것, 그게 17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장의 삭제 요청 권한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과기부·방통위 모두 이견이 없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해서 타당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처리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논의해 주실 게 19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지금 딥페이크 정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뒤에 지금 정부가 시책 마련하고 그다음에 자율규제의 개선 권고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EU 쪽보다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주로 하고 있는 게 정부의 시책 그다음에 민간의 자율규제 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43쪽과 47쪽에 나오는…… 그러니까 43쪽에 지금 정부 시책 마련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47쪽 자율규제 개선 권고하는 부분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다, 미시적인 부분만 좀 수정하실 부분 있으면 하시고.

다만 지금 19쪽 부분에 제가 수정의견에 박스로 지금 수정안을 낸 부분은 우리가 기본

적인 체계가 AI 기본법에서, AI 기본법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워터마크 표시의무를 부과하되 대신 과태료라든지 의무이행 확보 수단 없이 그야말로 자율규제로 이런 체계로 돼 있는데 과기부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AI 기본법은 이렇게 의무이행 확보 수단 없이 의무만 부여하면서 자율규제 형태로 가되 개별 법률에서 더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는 이런 체계, 그 예가 지금 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 범죄 관련해서 망법에, 지금 방통위에서 주장하는 거는 최소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들이 워터마크를 달 수 있는 이런 표시방법을 마련하는 정도의 의무는 부여를 하자 사업자에게, 이번에 딥페이크 범죄 대응으로. 그러면서 이 표시방법을 마련하게 되면 사실은 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여하고 그거를 이용하는 개인에게는 의무가 없습니다. 아까 뒤에 보여 드렸듯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표시방법을 사업자가 제공하면 개인은 그것을 선택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사업자에게 이 정도의 의무를 부여하고 대신 이 표시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의 구체적인 의무이행 확보 수단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한번 논의를 오늘 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거라 이걸 먼저 좀 논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 더 필요하신 개별 사안들은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어떻게, 지금 제안하신 대로 해요? 아니면……

○이해민 위원 그렇게 제안하신 대로 하고 미비하다고 생각하면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예, 그러시지요.

주제별로 토론하자는 그……

○최형두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다 내 놨으니까 이 부분 죽 보시면 되겠네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우선 그러면 한번……

○소위원장 김현 하나하나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확정적으로 17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17쪽은 지금 보면 수사기관의 장이 과거에는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삭제 요청 권한이 있었는데 이런 딥페이크 동영상물 같은 복제물·편집물·합성물도 삭제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수용 의견으로……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그래서 이거는 반영하시는 걸로 하시고.

다음에 43쪽 가셔 가지고……

○한민수 위원 정부도 똑같이 수용 의견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예, 수용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43쪽에 정부 시책 마련 관련해서 박충권 의원님 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과기부에서 조금 의견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수용 의견이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갑 의원님, 박충권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께서 내셨던 정부 시책이 인공지능의 기술에 의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수정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46페이지를 보시면 망법에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시책의 마련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시책을 이렇게 이렇게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특히 7의2에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정보 중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보급과 개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정 분야를 보완해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내용은 전체적으로 합성 영상에 대한 그리고 정의 조항에서 다룰지 안 다룰지 소위에서 정하시지 않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책 마련에서는 46페이지에 있는 4조에 추가적인 내용으로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래서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해 드리면 지금 현행 망법 4조 제7의2호에 이런 어떤 거짓 정보의 식별 기술 개발·보급에 관한 규정은 현재도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관련 피해 실태 파악이라든지 시책 마련에 대해서 제44조의11 개정안이 더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조를 신설하는 방법도 있고 44조에 항을 신설해서 이 딥페이크 피해 실태 파악 및 어떤 정부 시책 마련된 내용을 담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로 신설할 건지 아니면 항 신설 정도로 하실 건지 그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호로 할 건지 이렇게 봐 주셔도……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일부 호 신설로도 잘 수도 있고.

○**이해민 위원** 혹시 의견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현** 예, 말씀하세요.

○**이해민 위원** 이 부분이 잘못하면 일반적인 딥페이크 영상, 여기서 일반적인 딥페이크 영상이라 함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 영상들까지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서 잘못하면 표현 자유나 아니면 언론 자유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저는 밑으로 항이나 호로 내리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한민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부 얘기대로 정보통신망법에 7의2호 들어 있기 때문에 저도 앞부분에 딥페이크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 여기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세부 항목들을 정보통신망법에 추가해서 하는 것도 좀 타당해 보이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항으로 담는 걸로 말씀해 주시면 과기부하고 상의해서 항으로, 항 신설로 담으면 될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항이나 호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것대로 타 법에 있는 것처럼 아청법에 의한 성착취물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하고 있는 허위영상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충

권 의원님도 주셨던 시책들, 실태조사와 내용들은 담아 두되 앞쪽에 있는 호건 항이건 정리함에 있어서는 성착취물과 거기에 허위영상물로 정리하는 부분 그리고 시책에 대해서는 박충권 의원님 주셨던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최형두 위원 최형두입니다.

지금 강 차관님 말씀하신 것은 4조의 2지요. 이 법의 4조에 이미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4조의 7의2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일단은 망법 체계를 보면 시책은 4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조에 들어 있으니까 뒤쪽의 시책 말고 앞쪽으로 포함을 시키고 거기에 빼져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형두 위원 왜냐하면 오히려 법 조항이 앞설수록 그 법의 우선순위라든가 법의 주요 목적이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4조에서 앞서 4조의 7의2에서 44조의11의 신설로 하려고 했던 내용을 담는 것이 오히려 이 법안의 취지를 더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법안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4조에 시책에 관한 내용이 이미 제일 앞서 나와 있고 그 내용에 44조의11로 신설하려고 했던 이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더 법적인 메시지가 분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러면 이거는 지금 11시에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 중에 과기부랑 협의해서 지금 7의2호에 주로 거짓정보의 식별 기술 개발 이 부분 규정된 거에 추가해서 딥페이크 피해 실태 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 추진 내용을 빨리 조문화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 마무리하시면……

○최형두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 위원님 팬참겠지요?

○소위원장 김현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통위 말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다음으로 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저희는 행정실에서 내신 수정의견에 사실 동의하는 입장이라…… 이게 사실은 기준에 물론 망법 4조에 시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이 되게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과 관련한 시책 마련으로 한정하기 위해서 박충권 의원님 대안을 가지고 수정의견을 내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기준의 망법 체계를 가져가게 되면 너무 포괄적으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시책 마련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한정해서 시책 마련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행정실 의견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항 정도 신설로 해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어떤 예방 및 정부의 시책 이거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양 기관 다 수용 의견이고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택하시는 걸로……

○**소위원장 김현**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전문위원 얘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위원님들, 수용 의견으로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러면 다음 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어떤 과태료까지 의무이행 확보 수단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정부 측 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과기정통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논의하고 계시는 AI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표시의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인공지능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체 부분은 인공지능법에서 다루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인공지능법의 전체적인 법체계를 맞추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인공지능법 자체가 최종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인공지능 합성물에 대한 문제들이 개별법에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방통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악용이 우려되는 정보에 한하여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고자 하는 행정실 수정의견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의 신뢰성 및 이용자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표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사업자·이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추후에라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표시의무 미이행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보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참고로 지금도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걸로 수정의견이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과기정통부 말씀에 우선 저는 공감을 하는 바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청회까지 한 AI 기본법의 아주 큰 부분이라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워터마크를 아무리 부여한다 해도 그 워터마크를 깨는 방법은 저조차도 한 5초면 지울 수 있거든요. 다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기술로는 너무 많이 존재를 해서 이것을 여기에서 잘못하면 전혀 효용성이 없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생기는 그런 측면에서 과기정통부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사업자 쪽에는 어떤 의무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방금 방통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나 하면 사업자가 이게 딥페이크 영상인지 아닌지, 딥페이크 콘텐츠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그걸 판별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우회하는 방법이 많아서 어렵지만 이게 유해성을 가지는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한 70%에서 90% 사이의 확률로 디텍트를 해낼 수 있는 방법들은 마련을 할 수 있어서 플랫폼 쪽에는 그런 규제 부분을 향후에 추가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저도 지금 인공지능 기본법이 신설되기 전에 인공지능 기술 이용 거짓 정보 유통에 대해서 이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러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용자 등 수범자의 광범위하게 법을 위반할 우려도 생겨서 이것은 인공지능 기본법하고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말씀하세요,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AI 기본법과 같이 논의하거나 기본법에서 먼저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공감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AI 기본법에 관한 논의를 그렇게 오래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규제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하시는 그런 기류가 감지돼서, 저는 이 표시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먼저 선행하는 것으로 넘겼다가 빠지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I 기본법 우선 논의로 돌리더라도 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그 전제로 법체계상 AI 기본법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 정도는 달아서 유보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과기부 부분수용 의견인 거잖아요. 그런데 규율 대상을 일반 국민이 아닌 사업자에게 부과하겠다, 이게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김장겸 의원님 발의 법안 내용에 있는 표시된 것 워터마크를 임의로 제거한 일반 사용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한 것 아닌가, 표시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자는 사업자더라도 기왕에 표시된 워터마크를 사용자들이 임의로 제거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 검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아까 노종면 위원님이 주셨던 말씀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걸 회피하거나 아니면 조작해서 그것을 지워야 될 부분은 AI법의 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내용에 책무를 주고 이용자는 그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거기에 대한 워터마크를 제거했을 경우에는 일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정리함에 있어서 AI법 논의 때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될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통위 입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 노종면 위원 예.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일단은 저번에 공청회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AI 규제에 대해서 자율규제로 가져가자는 기본법의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기본법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부분이 기본법과 충돌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법에서 전체적으로 AI 규제와 관련된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난번 공청회에서 얘기된 것처럼 딥페이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체적인 위협이지 않습니까? 잠재적인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좀 더 규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사업자한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했을 때 1000만 원 과태료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용자가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인공지능 생성물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알릴 수 있는 툴을 제공해 주면 그걸 가지고 이용자가 표시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도 이게 인공지능 생성물이구나, 딥페이크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해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우회하는 방법 그건 워터마크니까, 기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워터마크에 대해서는 우회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소위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도 있지만 사업자가 그냥 이게 인공지능 생성물이다, 아니다를 표시해서 이용자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인공지능 기본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인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한민수 위원 위원장님.

○ 소위원장 김현 예, 말씀하세요.

○ 한민수 위원 좀 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의문이 있는데 우리가 정보통신망법에 이 표시방법을 의무화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유예를 준다는 거지요?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사실 해외 빅테크 플랫폼 같은 경우에 이미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 1년 정도 유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한민수 위원 그래서 AI 기본법을 우리가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차관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정보통신망법에 이런 표시의무를 넣고 과태료 조항까지 넣으면 충돌이 생깁니까? 저는 왜냐하면 기본법 자체는 이런 것에 대한 의무조항이랄지 큰 틀을 담는 거고 이건 개별법에서 또 필요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강도현 인공지능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세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강도현 예, 말씀해 주십시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죄송합니다. 인공지능국장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인공지능 기본법은 일종의 모법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망법이라든지 성범죄 관련된 법이라든지 그런 개별법으로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는 생성과 표시에 대한 기본적인 걸 담게 되면 모든 개별법은 그 조항을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개별법에서 추구하는 법익이 침해된다든지 혹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악의적으로 표시의무를 삭제했을 때는 그 개별법에 처벌규정을 두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망법을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법체계 전체를 놓고 볼 때 모법이 되는 인공지능법을 생성형 AI가 되든 아니면 다른 기술을 통해서 딥페이크를 만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표시와 고지의무를 명확하게 두고 그리고 사업자한테 그런 의무를 둔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개별법에서 그 조항을 따 와 가지고 그 조항을 위배했을 때는 처벌규정을 두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과방위에서 특별히 인공지능법을 중심으로 두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성범죄법이라든지 다른 개별법에서도 이런 논의가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개별법마다 생성형 AI에 대한 고지나 표시의무를 계속 담아야 되는 모습이 생기고요. 대신에 기본법에서 먼저 담고 그 조항을 인용하고 개별법 조항에서 법익의 침해가 있다 그러면 그 조항에 근거해서 처벌을 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노종면 위원 제가 말씀 좀……

○소위원장 김현 말씀하세요.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체계면 문제가 없지요. 되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AI 기본법에서 표시의무를 담지 않은 상태로 또는 기업 자율규제에 맡긴 상태로 이런 개별법에서 처벌·규제조항을 두면 충돌될 것이다,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체계라면 쉽습니다, 이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저희가 지금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고지·표시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내신 법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인공지능법에서 생성형 AI라는 것은 트랜스포머 기술을 이용한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다른 걸 가지고 딥페이크라든지 생성형 합성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법을 논의할 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지만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다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라도 합성물을 만들고 그게 딥페이크에 해당된다 그러면 표시할 수 있는 투명성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방통위에서 말씀하신 저희 심사 자료 맨 마지막에 있는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사업자에게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타당하다, 권장까지만 말씀을 드리냐면 악의적으로 이걸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이걸 처벌규정까지 들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업자에게 이 정도의 표시제 사례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권장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이훈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기 위원 그 광범위한 표시의무 부과가 의무 대상이나 범위 그리고 삭제의무, 수범자

범위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본법과 같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방통위는 좀 다른 건가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저희는 광범위하게 이걸 다 규제하자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김장겸 의원님 안을 보면 허위조작정보 부분과 관련해서 생성물 표시를 다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에서 수정의견을 주셨고 그게 지금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성적 범죄물이 될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정치인들에 대한 패러디물 이런 형태로 주로 현장에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범위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용자에게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를 알려 주는 정도의 의무를 주는 건 괜찮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래서 또 하나의 절충안이라면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 규정은 두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AI 기본법에서는 생성형 AI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고지 이런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각 개별법에서, 지금 차관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이걸 인용하면서 처벌규정을 앞으로 두어 나가자, 개별법에서. 대신 AI 기본법에서는 구체적인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규정에는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과기부에서.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서 과태료까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저희가 의무만 부과하고 그리고 과태료 규정은 두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절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강도현** 지금 협행에 있는 이 조항들의 내용이 정의 조항부터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 가는 합성물·복제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 거기에다가 내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법을 다루시고 논의하실 때 과연 표시의무와 내용을 어디까지 담을 것인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이러한 표시의무 전체는 체계적으로 인공지능법이 다루어지고 입법이 된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개별법에 다룰 수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행령 자체도 1년 뒤에 시행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 여기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그리고 필요하면 인공지능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다룰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인공지능법에 거기에서 무슨 자율규제로 이렇게 단정해서 집어 넣고 다른 데는 처벌을 못 한다 이런 체계가 아닙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소위에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논의하실 때 있어서도 그런 체계를 배제시켜 주시면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자체가 지나치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실 인공지능법이 다루고 있는 법규성을 일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표시의무제고 전체적인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그쪽 분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말씀하세요.

○**노종면 위원** 여기 소위 자료 마지막 페이지 생성물 표시제 사례, 제가 존경하는 이해민 위원님 의견을 정확히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조금 상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에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위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의무로서의 표시는 딥페이크 프로그램이나 그와 유사한 새로운 합성물을 만드는 툴을 돌렸을 때 자동으로 워터마크가 찍히는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상이 합성기술을 이용한 것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업로드 단계에서 표시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비약해서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필요한 것, 새로운 디지털 영상 합성기술이 고도화된 지금 필요한 것은, 그 고도화된 프로그램들이 다 출시라는 과정을 거칠 것 아닙니까? 그 단계에서 그 툴을 사용할 때 무조건 워터마크가 찍히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굳이 우리가 현존하는 것으로 좀 떠올려 보면 지금도 동영상 편집툴을 이용할 때 무료 버전을 이용하면 찍히지요, 뭔가가. 그것과 유사한 기술이 출시되는 단계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사용자가 뭔가를 만들면 무조건 그것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활용해서 어떤 또 다른 영상을 만들면 그 영상이 사용된 부분에는 워터마크가 떠야 된다는 거지요.

음성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파일, 제가 말한 것처럼 이상한 얘기를 한 게 녹음이 돼 있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을 영상 창에다 띄우면 그런 워터마크가 뜨겠지만 음성으로만 들리는 그런 창에서는 뭔가 신호음이 들어가게 만드는 그 기술을 법이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건데 지금 여기 사례로 이걸 들어서 저는 좀 충격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종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공지능 기본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본법을 보면 인공지능 사업자가, 그러니까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생성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그런 표시를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그걸 탑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워터마크 같은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기본법에 반영이 돼 있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일단 지금 딥페이크 영상물이 인터넷상에서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라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용자가 보다 더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판별하고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좀 더 드리겠다. 그리고 이게 사업자가 구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를 통해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유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법안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노종면 위원 일종의 과도 조치인 거네요?

○이해민 위원 맞아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그렇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인공지능 기본법하고 충돌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요.

○노종면 위원 아니, 인공지능 기본법을 지금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했다고 하시고 우리 공청회 때는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와서 조금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지금.

○이해민 위원 사실은 노종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인공지능 기본법 표시의무에서 다를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본법 쪽에서 다뤄져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그야말로 기능 제공에 불과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노중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또한 효용성 면에서는 물음표가 있으나 최소한의 방어 조치,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것에 인공지능 기본법을 따라서 이제는 표시의무 까지 감에 있어서의 정말 한 걸음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고 쪽으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민수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현 예, 말씀하세요.

○한민수 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좀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법안이 우리가 만들어지고 시행까지 실제로 1년을 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한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방통위에서 이게 우리가 AI 기본법 제정에 앞서 가지고 딥페이크 이렇게 심각하니까 실효성 측면에서 바로 필요하다는, 저는 그건 선뜻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바로 시행이 된다거나 어떤 경고 차원이라도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유통시키는 사람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 하지만 1년씩 둔다면, 그 사이에 우리가 AI 기본법을 제정을 할 것이고 한다면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신 법안이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부칙 규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이걸 좀 빨리 시행하는 형태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할 텐데요. 일단 사업자들이 이 법안의 조속한 시행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주요 사업자들은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현 예, 말씀해 주세요. 직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인공지능 국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모법과 개별법을 한 자리에 놓고 정합성을 가지면서 논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논의될 때 이 망법도 같은 자리에 놓고 나면 더 정합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검토의견을 내고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전체에게 이렇게 표시, 워터마크를 규정하는지 여부는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별 개별 내용의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자기가 직접 올릴 때는 자기가 생성했다고 알 수 있지만 제삼자의 물건을 올릴 때는 이게 생성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지금 이 조문상에서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검토 내용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법이 그냥 정합성이라는 문제 그리고 몇 가지 검토돼야 될 게 안 된 상태에서 가는 게 1년 뒤에 할 법인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능하다 그러면 인공지능 법안을 만들 때 이 법도 같이 올리면서 소위에서 정합성을 가지고 논의를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정합성도 있고 지금 우려하셨던 몇 가지 부분들 그 부분도 그때 같이 논의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제가 수정안을 내게 된 취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번 소위가 딥페이크 범죄 대응, 어떤 플랫폼 사업자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번 입법의 목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시책 규정이라든지 자율규제에 관한 것은 담았는데 정작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강화 부분이 없다 보니 뭐라도 지금,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딥페이크 범죄의 방지 이런 의무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의무이행 확보 수단을 두는 것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고.

인공지능 기본법안에 워터마크 표시하고 고지 규정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 지금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무이행 확보수단까지 두는, 그러니까 과태료를 둔다든지 그런 내용까지 같이 논의된다면 저는 그러면 이것은 아예 처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 기본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동안 정부가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의무이행 확보 수단은 두지 말자는 쪽으로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뭔가 조금이라도 딥페이크 범죄 문제가 구체적으로 됐으니 AI 기본법 할 때까지 그냥 미루자 이런 것도 하나의 옵션이지만 다른 옵션으로 이런 규정, 예를 들어서 아까 의무 규정이 힘들다면 권고 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에게 노력하여야 한다는 뭔가 그래도 우리가 책무 강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걸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수정안을 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박충권입니다.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AI 생성물이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처벌 규정을 뒀을 때 누군가가 만약에 악의적으로 그 플랫폼 사업자를 공격할 목적으로 AI 생성물을 만들어서 잔뜩 올려 놓고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한다 그러면 그 플랫폼 사업자를 완전히 죽여 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고려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형두 위원** 수석 의견하고 과기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의원님들뿐 아니라 국민들이 우리 상임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이렇게 창궐하는 동안에 주무 상임위 중 하나인 과방위는 뭐 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법안들이 대표발의되었고 우리도 뭔가, 오늘 한 이유도 9월 중에 빨리 국민들의 부름에 응답해야 된다는 강한 책무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그래서 수석 의견을 들어 보니 또 과기부차관님이나 또 인공지능국장님 의견을 들어 보니 권고 규정이라든가 또는 이것 보면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나중에 될 법안과의 충돌을 미리 방지해 놓는, 나중에 법이 생기면 대통령이 구체적인 규율 대상을 정하고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님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그렇습니다. 예외 규정을 둬서 사업자들에게 표시방법 마련 의무를 두든 아니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두든 또 예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표시방법을 다 마련하는 게 영역에 따라서는 불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어떤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기부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말씀대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AI법과의 정합성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AI법의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도 생성물 내지는 합성에 관련한 표시의무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무를 AI법에서 담아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저로서는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망법이 규율하는 기본적인 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플랫폼이라고 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재의 조항으로 보면 플랫폼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나 일부의 여러 가지 정보통신서비스를 하는 사업자 전반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분야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상의, 논의해 주시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AI법에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망법에서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담는 것이 맞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AI법에 대해 현행 AI법은 지난번에 공청회 이후에도 많은 변화들, 특히나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 입법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이 이렇게 중복되게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법체계상.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어찌 보면 법체계가 규율이 그쪽으로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난번에 공청회 때 다시 리뷰를 해 보면 인공지능 시스템은 어떤 거냐, 운영자는 어떨 거냐, 개발자는 어떨 거냐, 이용자는 어떨 거냐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자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바라보면 여기에 내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 권고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과연 지금의 문제점을 다룰 수 있을지라는 부분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면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차관님, 정부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우선 수석님께서 여러 가지 전체에 주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원님 발의 중에서 빠져 있었던 불법정보에 있어서 아첨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담는 것, 두 번째 정부 시책에 있어서 강력하게 별도로 성착취물에 대한 것, 허위정보에 대한 문제를 담아 주는 것, 세 번째 자율규제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자율규제 권고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박충권 의원님 안을 수정안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담고 있는 실태조사, 보호 책임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쪽 파트는, 표시의무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그리고 아까 좀 지나갔는데요. 박충권 의원안에, 43쪽 제44조 1항에 보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으로 하면 성폭력 처벌법의 조항으로 들어가면 성적 욕망, 수치심 등을 표식하는 걸로 제한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 넓어져서 표현의 자유와 충돌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성적 욕망, 수치심에 관한 표식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인터넷기업협회의 의견에도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성적 욕망 내지 만족, 인격의 표상, 디지털 데이터 이런 얘기들, 성폭력 처벌법에 근거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특정해서 들어가야지만 너무 광범위해지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거든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사람의’ 이 말이 들어간 게 성범죄도 문제가 되지만 딥페이크 사기, 딥페이크 보이스피싱처럼. 그러니까 딥페이크의 정의 중에 여러 정의가 있지만 ‘사람의’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사람과 관련된 얼굴·신체·음성, 그러니까 성범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딥페이크 범죄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 실태 파악이라든지 시책을 마련하라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성범죄를 포함한……

○**소위원장 김현** 넓은데 이게 사람으로 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성폭력 착취물이냐 아니면 표현의 자유냐라는 논쟁이 발생됐을 때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있거든요. 우려 사항이 있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과 화가의 작품에 붙여서 그게 사실은 딥페이크냐 아니냐, 그게 화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영역 갖고 논쟁을 했지만 그게 영상물로 됐을 때 딥페이크냐 아니냐라는 걸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저희 쪽의 시민사회단체나 여성단체들하고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됐는데……

○**노종면 위원** 그런 우려점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이 조항이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뒤의 2항의 각 호를 보면 1호가 박충권 의원님 안에 보면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이렇게 된 걸 보면 지금 말씀대로 꼭 성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사기·명예훼손 이런 것들에 광범위하게 대책을 세우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넓게 규율하는 것이 도움이 더,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판단해야 될 게 오늘 광범위한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과기부 차관님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방통위 사무처장님 노력하셨는데 오늘 우리 상임위까지 열어서 지금 11개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뚱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국회 과방위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구나라는, 엊그저께 법안 가지고 보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우리 여성단체들은 거리에서 지금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들은 국회가 빨리 뭔가를 대응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우리가 좀 들어 주고 과방위도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오늘 보여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하고 우리 차관님 또 처장님께서 나중에 만들어질 법과 충돌을 피하고

법원의 중언부언도 피하면서 지금 아까 차관님께서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지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찾아냈던 부분을 해서 오늘 11시에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이것 미루면……

○소위원장 김현 그 것은 아까 얘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 교통정리를……

○소위원장 김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때 고려를 해 주시라는 취지고요. 지금 적어도 1항에서부터 12항에서 합의된 것, 그러니까 수용 의견으로 나온 부분을 정리해서 11시 회의 때…… 그러면 오늘 들어가셔야 되겠네, 이것 처리할 때까지. 그렇지요?

○최형두 위원 처리할 때까지.

○소위원장 김현 예, 처리할 때까지, 오후 한 4시쯤에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

○박충권 위원 간사님, 한 말씀만 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현 잠깐만, 그리고 13항·14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충분히 시간을 드렸으니까 검토해서……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러면 한 가지만, 지금 19쪽 그 내용은 반영하지 않으시고 그냥……

○소위원장 김현 아니요, 검토 같이…… 제 의견을 낸 거니까 한번……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아까 정부 시책에는 하여튼 디지털 성범죄 부분이 좀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책 내용 중에 그렇게 하고. 지금 19쪽에 표시방법 마련 관련되어서만 아예 이 부분은 반영을 안 하겠다든지 결정을 좀 내려주시면……

○최형두 위원 그것 정부 의견을 따르지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아까 방통위 입장을 말씀 못 드려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규제 대상 사업자 범위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너무 넓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은 사실 대통령령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최소한의 사업자가 의무를 지도록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박충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혹시 이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어떤 조작적인 부분, 의도적인 공격,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사업자가 그런 방법만 제공하면 패널티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소지는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박충권 위원 간사님.

○소위원장 김현 예, 말씀하세요.

○박충권 위원 43쪽에 정부의 시책 마련 관련된 부분을 지금 이 딥페이크 이슈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국민께서도 많이 지켜보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결과를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통위 의견대로 4조의2로 별도 조항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3항·14항·15항을 아직 보고를 안 하신……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그것은 하는데 제 말은 19쪽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책 마련은 조 신설로 그냥 하시자는 말씀이시지요?

○최형두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저희 생각은 별도의 4조의2에 두고 포괄적으로 두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충권 위원님 주신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이건 조건 간에 이번에 심의하는 것들의 내용 중의 핵심적인 것에 포커싱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착취물, 아니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허위영상물 그런 시책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지금 표현의 내용이 굉장히 좀 포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부의 정책을 법에 따라 시행을 하게 되면 범위가 스페시픽(specific)하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4-2로 집어넣으면 이게 시책 역시도 똑같이 AI법과 동일하게 같은 문제가 발생을하게 됩니다. 합성물에 대한 문제에 정부의 시책을 여기에 두고 있으면 AI법에 있는 정부의 시책 문제랑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또 약간 혼선이 있는 법체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착취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는 입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이 부분은 그래서 차관님 말씀을 반영을 해서 44쪽에 지금 박충권 의원님 안 1호를 보면 ‘합성영상물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이랬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성범죄·사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시 좀, 아니면 인용조문까지 달아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딥페이크 성범죄나 딥페이크 사기에 대해서 시책을 마련하라는 거다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예, 그러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리고 19쪽 이 부분만 결정을 해 주시면 망법은 대안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9쪽, 그러니까 표시방법 마련 관련된 내용을 채택하실 건지 말 건지.....

○소위원장 김현 노종면 위원님 말씀.....

○노종면 위원 제 판단이 아니라 지금 나온 의견들을 보면 이걸 지금 여기 담지 말자는 의견도 있고 담을 거면 권고로 담자는 의견도 있고 또 수정의견 주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권고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소위원장 김현 그렇게 하시지요. 권고까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러면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과태료는 안 두는 걸로.....

○소위원장 김현 왜냐하면 AI 기본법이 강제해 내는데도 여기서 다뤄 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위원님, 굉장히 아까 간사님들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걸 담는 문제하고 권고로만 가는 문제는 좀 대외적인 판단과 내용이나 반응이나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담았는데 그것이 권고 문제 정도로 그쳤다고 했을 때 여기에 우리 과방위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AI법 전체에서 세밀하게 다루는 형태로 하고 아까 우리 이야기한 대로 망법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동시에 병합해서 심사하는 것이 더욱더 맞는 거지…… 여기 정해놓고 사업자에 의무를 주면서 권고한다는 규정 자체가 그 뒤에 나오는, 이번에 논의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딥페이크에 대한 문제를 하는 과정에서 권고에 그쳤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법안에서 사실은 표시 같은 것은 다른 법안이라든가 기본법에서 충분히 다를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12개 법안이 되면서 그 문제까지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대책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또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나중의 상충을 피해서 권고 수준에 넣었을 경우에는 또 다른 큰 걱정과 비판이 예상되므로 이 부분은 정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법에서 다를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법안의 중점은 포커스를 분명히 두어서 빼지요. 이 부분은 과기부 의견대로 하고 그래서 일부러 우리 수석님께서 절충안으로 여기에 권고를 넣는다거나 하는 방식은 오히려 엉뚱한 메시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는 게 좋겠고. 지금 수석님하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정부가 협의하는 대로 오늘 법안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강력하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저도 동의하고요. 하지만 또 수석전문위원님의 지금 고민이 뭔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언급하면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AI 기본법에서 같이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제 생각에는 이 12건의 법안 중에 박은정 의원님 법안은 계류시켜서 계속해서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 및 사기 등 딥페이크 범죄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 11건의 법안은 대안 폐기하고 대안으로 의결하시고 추후에 필요하면 AI 기본법에서 논의하시고 또 새로운 위원회 안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망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소위원장 김현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까지와 1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1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의사일정 13·14항……

○소위원장 김현 의사일정 13항·14항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14항, 두 건의 방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심위의 직무 중 전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부분을 개정하여 심의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의 중요한 차이점으로 이훈기 의원님 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심의 대상에 ‘등’을 포함하고 있어 명확성이 떨어지고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심의 대상을 법률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동욱 의원안은 심의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현행 시행령과 같이 심의 대상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두 법안 모두에서 방심위 심의 대상에 대통령령의 위임 근거를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유형의 정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 등을 들어 신중검토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5쪽을 보시면 안 제21조의2제1항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법률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을 보시면 안 제4항으로 시정요구 조치 결과 통보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을 보시면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계시판 관리운영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심위 심의 대상에 시행령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상향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등으로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정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져 심의제도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기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제가 발의한 법안인데 이걸 발의한 취지는 방통위 설치법에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대통령령에 있는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 이 ‘등’을 가지고 방심위에 대해서 가짜뉴스라는 명목으로 인터넷 언론에 대한 검열을 하려고 하고 그때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발의한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 ‘등’을 없앨 경우, 여기 심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폭력·잔혹·혐오 정보, 차별·비하 정보, 여기서 한 다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게 빠질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엔 타당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법에 호를 추가해서 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넣고 ‘등’을 가지고 어떤 인터넷 언론을 검열하는 것은 막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동욱 의원안은 지금 시행령을 법으로 상향한 것 외에는 큰 의미는 없는데, 제 입법 취지는 그 ‘등’으로 인한 인터넷 검열의 폐해를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8페이지 지적하신 이것을 법 호에 추가를 해서 명확하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최형두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방심위와 방통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불법정보 범위의 문제가 되는 온라인상의 유해정보가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질서 위반, 차별·혐오…… 아까 그래서 그것을 각 호로 주자고 그랬는데 계속 그러면 또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아마 앞으로.

○이훈기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제가 보기에는……

○최형두 위원 그래서 온라인상 유해정보에 대한 방심위 심의가 필요하고 또 방심위 심의를 통해서 이것이 지나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그 과정에서 또 국회의견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이런 구체적으로 그 자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등이라는 것을 빼고 딱 적시한 것만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정부가 이런 급변하는 사회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훈기 위원님이 딱 이렇게 상임위에 버티고 있는데 함부로 검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부가 신속하게 신기술의 발전과 또 급변하는 사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런데 이……

○소위원장 김현 저기 잠깐만요,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예.

○소위원장 김현 지금 저희가 전체회의가 11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훈기 위원 아, 제가 그러면……

○소위원장 김현 예.

○이훈기 위원 최형두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방통위원회에서 그때 이것 인터넷 심의를 하면서 근거를 이 조항으로 댔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김현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소위원장 김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훈기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현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3·14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인해 조치의무사업자가 인식한 경우에도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 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본 개정안이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2건의 강유정의원안, 즉 법사위 소관 성폭력처벌법안과 여가위 소관 청소년정보보호법안 모두 사법경찰 관리에게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의무를 부여하였는데 두 법안 모두 본회의

통과 대안에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여가위는 청소년성보호법 대안에서 사법경찰관리가 방심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접속·차단을 자체 없이 요청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방통위와 과기부 모두 법률적 정합성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필요 의견인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이것도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넘기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성은** 방통위 의견도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현**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형두 위원**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계속 검토로.

○**소위원장 김현** 전문위원님, 이것 수용하자는 의견 아닌가요? 우리 지난번 법안에 통과가 이미 됐잖아요, 9월 26일 날?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런데 법사위하고 여가위에서도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심위 체계를 그래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경찰에서 직접 요청해서 사업자들이 그것을 판단하게 하기보다는 현 체계, 방심위의 심의를 거쳐서 가는 체계로 지금 타 위원회들에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종면 위원** 그런데 우리 아까……

○**소위원장 김현**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성범죄 관련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장의 삭제 권한 확대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것은 심의 요청 단계고요. 이것은 직접 수사기관의 장이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처리한 부분은 심의 단계입니다.

○**노종면 위원** 심의 단계라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그러니까 망법 44조의7(불법정보), 성착취물 같은 것을 포함한 불법정보에 대해서 2항과 3항에서 방통위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 중의 하나로 방심위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삭제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심의……

○**노종면 위원** 수사기관이 방심위예요?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김우석**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입니다.

아까 망법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신 부분은 전기통신망법 제44조의7 부분에서 수사기관의 장이 기존의 처벌법 14조만 들어 있던 부분을, 발의하신 내용은 14조의2까지 넣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부분까지 넣어서 요청하도록 하자라는 거였는데

그 요청은 방통위를 통해서 방심위에 심의·요청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다루는 내용은 수사기관의 장이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 요청을 한다라는 부분이어서 심의와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입니다.

○**이상희 위원** 경찰이 바로 업체에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계류시키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현** 의사일정 제1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과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기부2차관, 방통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장겸 김 현 노종면 박충권 이상희 이정현 이해민 이훈기 최형두 한민수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 염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조성은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